

제 5 장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의 지정

5.1 종합평가 산정절차

5.2 종합평가 결과

5.3 안전등급 지정

제 5 장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의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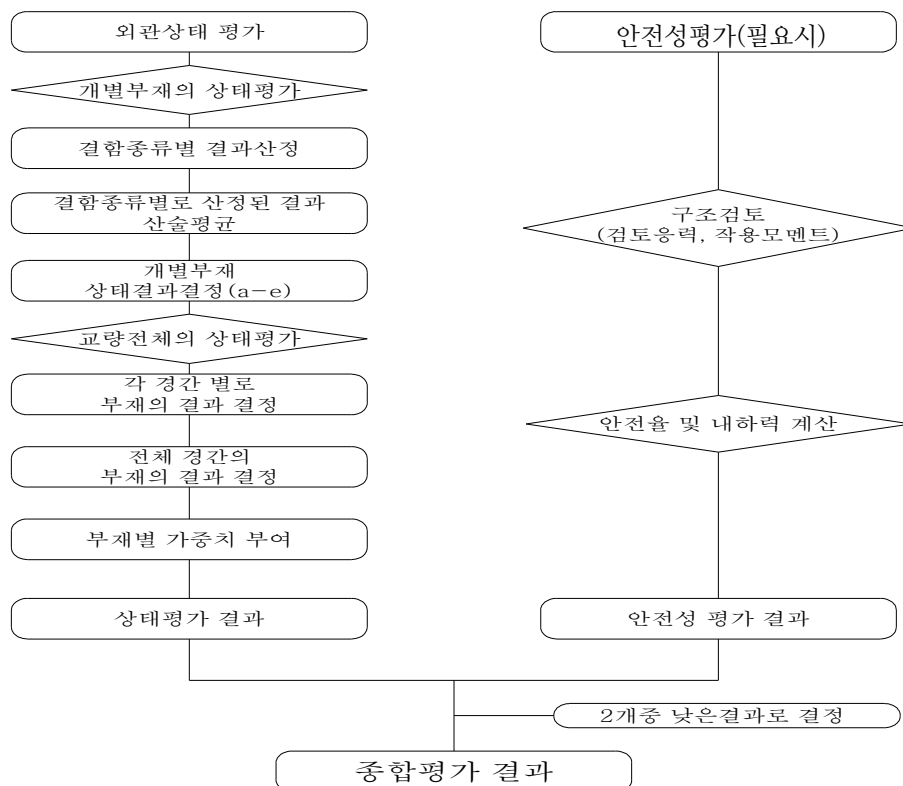
5.1 종합평가 산정절차

5.1.1 개 요

정밀점검 시 안전성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상태평가 만을 수행한 경우는 상태평가 결과를 해당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로 하며, 안전성평가까지 모두 수행한 경우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결과 중 낮은 결과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로 결정한다.

5.1.2 종합평가결과 산정방법

종합평가결과 산정방법은 <그림 5.1.1>과 같다.



<그림 5.1.1> 종합평가 결과 산정절차

· 종합평가 결과 = MIN(상태평가 결과, 안전성평가 결과)

5.2 종합평가 결과

본 교량의 상태등급 산정결과 야목2교(목포1)의 환산 결함도 지수는 0.220으로서 상태평가 산정기준에 의해 상태등급은 “B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2.1〉 종합평가 결과

구 분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비 고
평가내용	$0.13 \leq 0.220 < 0.26$	—	
평가결과	B	—	
종합평가 결과	B 등급		

대상교량은 현재 수준에서의 급격한 사용성 저하 및 안전성에 문제를 유발할 만 한 손상 및 이상결함은 없는 상태이다. 다만, 외관조사결과에서 제시된 일부 초기결함 및 손상개소에 대해서는 내구성, 사용성 저하방지를 위한 부분적인 유지보수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3 안전등급 지정

과업대상 교량에 대하여 각각의 주요부재 및 교량 전체의 상태평가내용을 반영한 종합평가결과 현재 대상구조물의 안전등급은 양호한 수준의 ‘B등급’으로서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에 해당한다.

〈표 5.3.1〉 안전등급 지정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안전등급 지정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B 등급
C(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 안전에 위협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